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해물품 등을 제공한 사업자에 조치 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33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해물품 등을 제공한 사업자에 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상향입법	3
2.. 수거등조치 계획서 미이행 및 거짓 이행 시 과태료 규정 신설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파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Ⅲ. 검토의견

1. 위해물품 등을 제공한 사업자에 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상향입법

□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시정 계획서 제출, 시정계획서 보완 명령, 시정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및 조치결과 보고 등의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2.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	나.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거·
· 파기 등의 명령	· 파기등의 명령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② (생 략)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

-----이하 “수거·파기등”-----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

-----수거·파기등을 하여야 한다.

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제49조(수거·파기등의 권고 등) ①

-----수
거·파기등을-----.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수거·파기등의 명령 등) ①

-----그 사
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거·파기등 및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
修)(이하 “수거등조치”라 한다)--
-----<단서 삭제>

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거등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수거등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조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신 설>

<신 설>

<신 설>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명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거등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험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u>제1항의 규정</u>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u>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u>를 취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u>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제20조의4제1항·제30조·<u>제50조</u> 또는 <u>제80조의 규정</u>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u>제50조제1항 단서</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업자에게 수거등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⑥ ----- --<u>제1항</u>----- ----- ----- --<u>수거등조치를 할</u>-----.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⑧ <u>제1항에 따른 명령과 제7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u>----- ----- 제82조(청문) ----- ----- -----<u>제50조제1항</u>-----<u>제80조</u> ----- ----- -----<u>제50조제5항</u>----- -----.
--	--

□ 현행법¹⁾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 등의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등의 결함에 따른 수거·파기 등 조치 명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살펴보면, 조치 명령의 서면 통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명령 절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시행조치 및 이행보고 등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까지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행령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1)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시행령 법률 상향 조문 현황 ＞

개정안 (제50조)	시행령 제38조	규 정 내 용
제1항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등조치 명령 시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할 것
제2항	제3항 제5항	▶ 사업자는 수거등조치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시정계획서 제출 ▶ 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 결함 물품의 명칭, 제조연월일, 결함 내용·원인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 등 ▶ 계획서 제출기한 단축 근거(“긴급하고 현저한 위해 우려”)
제3항	제4항	▶ 미흡한 계획서에 대한 보완 명령
제4항	제6항	▶ 사업자는 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 이행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
제5항	-	▶ 긴급한 경우 시정계획서 관련 절차(개정안 ①~③항) 생략 가능 (※ 현행법 제50조제1항 단서)

□ 현행법은 사업자의 위해물품 수거등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의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계획서에 따른 이행의무가 직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해물품 수거등조치 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계획서 제출의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서에 따른 즉시 이행 및 보고 의무 역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위해물품 등의 수거·파기 등 조치 명령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안전기본법」 2)에서도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

2)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를 법률에 규정³⁾하고 있음.

- 다만, 「제품안전기본법」에서도 위해물품의 수거 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작성의무는 법률로 규정하고 계획서 작성·제출의 절차와 방법, 보완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일부 절차적 사항 및 세부 규정은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위해물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등 및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이하 “수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3)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등조치”라 한다)를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 명하거나,
②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물품의 수거·파기 외에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직접강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행령에서도
물품등의 수거·파기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수거등조치 계획서 미이행 및 거짓 이행 시 과태료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위해물품 수거등조치 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①계획서 제출의무, ②수거등조치의 결과 보고의무, ③긴급한 상황에서의 수거등조치의 결과 보고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행위에 대해 각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① ----- ----- ----- -----.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0조제1항-----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0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u>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3. 제50조제5항에 따른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개정안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수거등조치 계획서 제출 및 수거등조치 결과 보고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사업자의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의 신설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을 고려하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인 「제품안전기본법」에서도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4) 제2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 의 처
02)6788-5115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